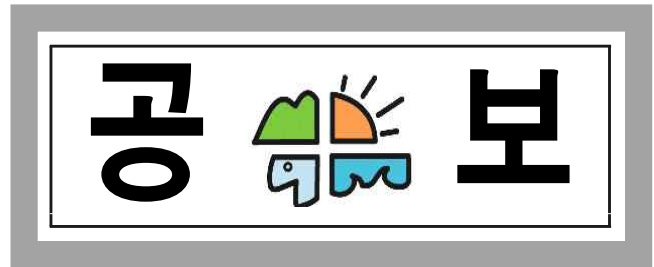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78호 2014년 8월 8일(금)

공 고

-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
· 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2
-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공시송달공고..... 13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14년 8월 27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로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8일

속 초 시 장

1. 특구의 명칭 :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2. 특구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 일원 381개 필지
3. 특구의 면적 : 838,446㎡
4.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Gangwon(Sokcho, Pyeongchang, Goseong) Pollack Industry Special Zone

5. 특구지정의 필요성

- 강원도 명태 브랜드 가치 제고
- 강원도 명태 가공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통체계의 현대화
- 융합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실천

6. 특화사업자

- 사업자 : 강원도지사, 속초시장, 평창군수, 고성군수
- 주 소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속초시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평창군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고성군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7. 특구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 없음

8.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구분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세부사업명
일반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차량통행 제한	축제장 인근 (속초갯길콤플렉스센터 및 거진항 인근)	Ocean Hurb 산업관광 활성화사업 연계운영, 황태 테마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 완화 (조례로 별도로 정함)	특구 지역 내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간판 설치	안내간판 설치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3조)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점용 허용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40번지 일원, 대관령면 황계리 48-4번지 일원 거진읍 송포리 213 일원	황태 테마거리 조성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6조의8)	특허 출원시 다른 출원 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가능	명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R&D 연구지원 가공요리 및 식품개발
권한 이양 규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43조)	특구내 생산된 명태 가공식품, 신제품의 차별화 고급화를 위한 규제특례 인정 (차별화된 상품표시)	각종 명태관련 생산물의 홍보 및 안내에 문구 적용	명태 브랜드 개발, 상품 포장재 개발지원

9. 재원조달 방법

- 총사업비 : 37,004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9년(6년간)
- 재원별·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도별 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총사업비	계	37,004	6,459	7,015	11,990	11,540
	국비	10,945	1,700	1,700	4,060	3,485
	지방비	14,880	2,490	3,085	4,900	4,405
	기타(민자)	11,179	2,269	2,230	3,030	3,650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계	32,134	5,909	5,700	9,975	10,550
	국비	10,175	1,600	1,700	3,725	3,150
	지방비	11,440	2,140	2,050	3,500	3,750
	기타(민자)	10,519	2,169	1,950	2,750	3,650
R&D 활동지원	계	1,500	300	600	600	-
	국비	-	-	-	-	-
	지방비	1,200	200	500	500	-
	기타(민자)	300	100	100	100	-
인력양성 및 지원	계	450	-	175	175	100
	국비	-	-	-	-	-
	지방비	450	-	175	175	100
	기타(민자)	-	-	-	-	-
마케팅 지원	계	1,120	50	540	490	40
	국비	-	-	-	-	-
	지방비	760	50	360	310	40
	기타(민자)	360	-	180	180	-
관광지원시 설 운영지원	계	1,800	200	-	750	850
	국비	770	100	-	335	335
	지방비	1,030	100	-	415	515
	기타(민자)	-	-	-	-	-

10.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 해당 없음

1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2014 ~ 2019년(6년간)

12. 특구계획안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 장소

○ 열람방법 : 방문열람

○ 방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 미래산업팀(☎ 033-639-2376)

1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4. 8. 18. ~ 9. 1. (14일간)

14.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 목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의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 일시 : 2014. 9. 1.(월) 13:00

○ 장소 : 동해안갯길콤플렉스센터 세미나실

○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 생략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7일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위해 “소위원회” 설치
- “속초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중복된 기능 삭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추가 신설

3. 주요내용

- 소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심의사항의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둠 (신설 : 제5조)
-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신설 및 삭제
 -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 하지 아니 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 제3조 제2호)
※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보호 급여 결정
 - 나.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삭제: 제3조 제5호)
※ 속초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위원회 기능과 중복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030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전화 : 033-639-2355, FAX : 033-639-2380)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033-639-2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 처분 관련 사항

제3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8조제5항을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이하 “ <u>법</u> ” 이라한다) 제20조에 의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 제20조에 의하여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 략) <u><신 설></u> 2. <u>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3. <u>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u> 」(이하 “ <u>령</u> ” 이라 한다) <u>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현행과 같음) 2.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이하 “ <u>법</u> ” 이라한다) <u>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u> 3. <u>법 제23조제1항에 따른</u>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u>법 제43조제5항에 따라</u>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u> 」(이하 “ <u>령</u> ” 이라 한다) <u>제37조제1항에 따른</u>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항

5. 영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5조 ~ 제8조 (생략)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등에

<삭제>

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시장이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8조 제5항을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10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2014년 1,2분기)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대상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8. 8. ~ 2014. 8. 22.(14일)
3.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내 용	송달불능사유	비고
김재성	속초시 청호로 74*(청호동)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의 시정명령	폐문부재	2013년 1분기 대상
김병의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2*번길 9	"	이사감	2013년 2분기 대상
김정식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7, 103동 10*호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	폐문부재	2013년 2분기 대상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도시디자인과(☎639-2457)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 8. 8.

속 초 시 장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속초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

○ 연 락 처 : 033) 639-2457